

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실태 단속

건설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근로 능률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요인 상존으로 안전이사대 현장 점검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

추진배경

- 건설공사 현장은 타 사업장에 비해 근로자의 작업 연건이 매우 열악
- 열악한 근로 환경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 요인 상존
- 안전사고 방지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

관련근거

-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 및 시행령 제4조
 - 1억원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현장에 화장실·식당·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
-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(과태료)
 - 사업주가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

단속계획

- 이사대 건설현장 점검시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적발사항은 근로감독(고용노동부 등) 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

기대효과

-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안전사고 발생 감소
- 공사장 주변 청결민원 등 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
-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사현장 조성 및 근로자 자긍심 제고

◆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(건설근로자법)

제7조의2(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)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·식당·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과태료)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·식당·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◆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)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·식당·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(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)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.

◆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4조(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의 기준)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[별표]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(제4조 관련)

항 목	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
화장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 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. -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. -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.
식 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게(식사)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 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. 다만,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.
탈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. -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. -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.